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규칙 개정 현황에 대한 고찰

김 중 년*

-
- I. 서 론
 - II. 주요 중재기관 현황 및 중재규칙 개정 현황
 - III.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간 개정현황 비교
 - IV. 결론 및 시사점
-

주제어 : 서울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개정, 긴급중재인,
다수당사자 중재

I. 서 론

2013년 5월 국제중재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SIDRC')가 개소되었다.¹⁾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겸임교수

1)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한국의 국제중재 허브 시대를 열다”, 2014. 5. 24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SIDRC는 싱가포르의 Maxwell Chambers²⁾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으며,³⁾ 우리 정부 및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SIDRC는 몇 가지 점에서 특색이 있다.⁴⁾ 그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재기관들이 SIDRC 내에 그들의 지부 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상근 직원을 파견하거나 향후 파견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⁵⁾ SIDRC와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한 주요 중재기관은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ICC'),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 등이다.

이러한 중재기관들이 앞 다투어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기업들로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 것이다.⁶⁾ 한편 SIDRC에 입주한 주요 중재기관들은 최근 2년 내 중재규칙을

2) 싱가포르 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제도와 관련하여 세계 최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ADR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복합 ADR 시설이다(http://www.maxwell-chambers.com/corporate_id_and_mission 2014. 10. 6. 최종방문).

3) SIDRC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과 같이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이 아니고 중재 심리 시 필요한 서비스(심리실 등)를 제공하는 장소의 개념이다.

4) SIDRC는 법무부, 서울특별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공동으로 만든 법인이다. SIDR 이사진 및 운영진 현황 참조(<http://www.sidrc.org/about/03.php> 2014. 10. 6. 최종 방문)

5) SIDRC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HKIAC가 상근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기관들은 SIDRC와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쟁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 또는 중재 이용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이들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최근 국제중재규칙⁷⁾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데 본 연구가 이러한 개정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⁸⁾

이에 본고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간 특징 및 장점을 분석한 후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최근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KCAB 국제중재규칙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 제2장에서 주요 중재기관의 현황 및 중재규칙 개정 작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에서 각 중재기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고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김상찬(2014),⁹⁾ 김영주(2014, 2012),¹⁰⁾¹¹⁾ 김도훈(2013, 2012),¹²⁾¹³⁾ 박범철(2013),¹⁴⁾ 박원형(2012),¹⁵⁾

6) 예를 들어, HKIAC 중재절차에 관심이 있는 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서울에서 HKIAC 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HKIAC 중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SIAC의 한국인 직원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SIAC 절차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7)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규칙(2008년 11월 13일 대법원 승인, 2008년 12월 1일 시행), 국제중재규칙(2007년 1월 25일 대법원 승인, 2007년 2월 1일 시행), 국제중재규칙(2011년 6월 29일 대법원 승인, 2011년 9월 1일 시행), 국내중재규칙(2011년 6월 29일 대법원 승인, 2011년 9월 1일 시행) 등 총 4개의 중재규칙을 운영 중이다(대한상사중재원 웹사이트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medsharebrd/1000?sb_cls=1&sNum=3&dNum=0&mi_code=medsharebrd 2014. 10. 6. 최종방문).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2011년 6월 29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다.

8) KCAB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KCAB는 주요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 개정 내용 반영 및 그간 중재실무에서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중재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9) 김상찬,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4권 제2호, 2014, pp. 137~160.

10) 김영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의 2012년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5권, 2012, pp. 125~154.

안건형(2009)의 연구,¹⁶⁾ 박은옥·최영주(2013)의 연구¹⁷⁾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 중재기관의 규칙 개정 현황에 대해서만 다루거나 특정 중재기관의 현황과 규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긴급중재인 또는 신속절차 등 중재규칙의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주요 중재기관의 최근 중재규칙 개정 현황뿐만 아니라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분쟁해결조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II. 주요 중재기관 현황 및 중재규칙 개정 현황

지난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한 이래 2012년부터 2년 간 다수의 중재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ICC가 1998년 개정한 규칙을 14년 만인 지난 2012년 개정한 이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11) 김영주, "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29권 제2호, 2014, pp. 5~41.
- 12) 김도훈,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3권 제3호, 2012, pp. 691~716.
- 13)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 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제62호, 2013, pp. 198~221.
- 14) 박범철,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1호, 2013, pp. 177~200.
- 15)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2권 제2호, 2012, pp. 159~176.
- 16)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2008, pp. 182~190.
- 17) 박은옥·최영주, "중재에 있어서 실체적 준거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8권, 2013, pp. 107~116.

이하 'CIETAC')와 스위스상공회의소 중재기구¹⁸⁾가 역시 같은 해 규칙을 개정하였다. 다음 해에는 SIAC와 HKIAC가 규칙을 개정하였고 올해는 일본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JCAA'), ICDR 그리고 LCIA가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본 논고에서 살펴볼 것은 우선 국제중재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CC와 동아시아 지역 중재기관 중 우리나라 기업의 이용 빈도가 높은 SIAC, HKIAC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금년에 중재규칙을 개정한 JCAA를 살펴보고자 한다.

1. ICC

1) 기관 현황

ICC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미국 뉴욕과 홍콩에 지부를 두고 있는 중재기관이다. ICC의 경우 처리하는 국제중재 사건의 수는 ICDR과 유사하지만 그 개별 분쟁가액이나¹⁹⁾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명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²⁰⁾

2) 주요 규칙 개정 내용

ICC는 2009년부터 전세계 중재 전문가 수십 명으로 구성된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소위원회에서 나온 초안에 대하여 Task Force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제정한바 있다. 개정 중재규칙은 2012. 2. 1.부터 발효되었으며 발효일 이후 개시되는 중재사건에 적용되고 있다.²¹⁾

2012년 ICC 중재규칙 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1) ICC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18)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 The Swiss Chambers of Commerce Association for Arbitration and Mediation.

19) 2012년 4월 25일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ICC가 공동 개최한 국제중재세미나에서 ICC 전 사무총장인 Jason Fry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ICC 국제중재사건의 평균 분쟁금액은 미화 약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20) 김영주, 전계논문(2012), pp. 125~126.

21) 김갑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2011. 11. 3.

범위의 확장 내지 특정, 2) 절차관리의 신속화 및 효율화, 3) 긴급중재인제도,

4) 다수당사자 및 절차 병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ICC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의 확장

일부 지역의 중재기관에서는 ICC 중재규칙에 따라서 ICC가 아닌 다른 중재기관이 중재절차를 관리하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사용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²⁾ ICC는 개정규칙에서 ICC 중재법원만이 ICC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²³⁾

1998년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적용범위를 ‘상거래 분쟁’에 국한시켰으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단순히 ‘분쟁’으로 정리하였다.²⁴⁾ 이는 당사분쟁 뿐만 아니라 투자자-국가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ICC가 관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²⁵⁾

(2) 절차관리의 신속화 및 효율화

개정 규칙은 “중재판정부가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이하 ‘TOR’)²⁶⁾를 작성한 시점 또는 그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건관

22)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ICC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을 말한다.

23)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1.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앞부분 생략) The Court is the only body authorized to administer arbitrations under the Rules, including the scrutiny and approval of award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It draws up its own internal rules, which are set forth in Appendix II (the “Internal Rules”).

24) ICC Arbitration Rules 1998 Article 2.1. The function of the Court is to provide for the settlement by arbitration of business dispute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Rules”).

25)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위 중재규칙 개정작업의 개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으로 있어 본 논문 중 ICC 중재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은 김갑유 변호사의 법률신문 기고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26) 김민규, “ICC Terms of Reference 제도의 도입 검토”, 계간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제 340호, 2013, p. 47 ; TOR(Terms of Reference)은 ICC 만의 고유한 제도로서 중재판

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²⁷⁾ 또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종결 시 ICC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언제 ICC 중재법원에 중재판정문 초안을 제출할지 예상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²⁸⁾

(3) 긴급중재인제도

통상 임시적 처분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나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이러한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법원밖에는 없었다. 국제중재에서 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로 조속히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의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 중재신청 후 상당기간 동안은 절차의 구제가 곤란할 수 있다.²⁹⁾ 이에 ICC는 규칙 개정을 통하여 임시적 처분만을 담당할 긴급중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³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4) 다수당사자 및 절차 병합

최근 국제계약의 양상은 매우 복잡다기화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수 당사자들 간의 계약 형태가 많아졌으며 당연한 귀결로 분쟁 당사자 또한 다수인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종래의 중재절차에서는 이를 해결할 만한 효율적인 절차가 미비하여 개정이 요구되었으며 ICC는 이를 받아들여, 하나의 계약에서 다수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규율,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여러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다수의 계약 및 병합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정부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사건의 주요 논점 정리 및 이를 통한 향후 절차를 정하는 중재위탁요지서이다.

27)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24.1 Case Management Conference and Procedural timetable.

28)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27.

29) 윤병철,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제도에 대하여”, 법률신문, 2014. 6. 24.

30) 긴급중재인제도는 2006년 ICDR이 도입한 이래, ICC, LCIA, JCAA, SIAC, HKIAC, SCC(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기관) 등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소결

ICC의 개정 중재규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재 이용 당사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중재판정부 구성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중재인 제도, 복잡다기한 거래양태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다수당사자 및 절차 병합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국제중재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³¹⁾ ICC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SIAC

1) 기관 현황

SIAC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작년에 인도 뭍바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였다.³²⁾ 1991년 설립되어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는 SIAC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근 동아시아지역 중재 허브로서 패권을 놓고 HKIAC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³³⁾

2) 주요 규칙 개정 내용

ICC가 2012년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한 긴급중재인 제도, 다수당사자 등은 SIAC가 2010년 규칙 개정을 통해 수용한 것으로 SIAC의 경우 2010년과

31) Richard Power, "Briefing note on ICC Rule change", Kluwer Arbitration Blog, 2011. 10. 6. (<http://kluwerarbitrationblog.com/blog/2011/10/06/briefing-note-on-icc-rule-changes/>).

32) 상세한 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http://www.siac.org.sg/about-us/siac-india-office>)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SIAC 뭍바이 사무소는 중재절차 관리는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ICC 홍콩사무소는 직접 중재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33) 싱가포르 정부는 복합 ADR 건물인 Maxwell Chambers 이외에도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와 싱가포르국제중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싱가포르를 ADR 분야에 있어 동북아허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4/june/singapores-new-mediation-centre-and-court-will-cater-for-growing-demand-for-dispute-resolution-services-in-asia/>).

2013년 규칙 개정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에 걸친 SIAC 중재규칙 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크게 5가지로 1) 긴급중재인제도(2010년), 2) 다수당사자 중재(2010년), 3) 신속절차제도(2010년), 4) 중재법원제도(2013년), 5)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긴급중재인제도와 다수당사자 중재는 ICC와 배경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 신속절차 제도 도입

SIAC의 신속절차 제도는 분쟁금액이 싱가포르 달러 5백만 달러³⁴⁾ 이하 사건에 적용되며 통상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되고 중재판정부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³⁵⁾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사건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서 적용 가능한 분쟁금액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2) 중재법원 제도

SIAC는 기존의 이사회 대신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중재법원 제도를 도입하였다.³⁷⁾ SIAC가 보다 주요한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중재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며,³⁸⁾ 중재법원의 주요한 기능은 신속절차로 회부할지의 결정, 중재인에 대한 선정 권한, 중재인의 해임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³⁹⁾

34) 2014. 10. 12. 기준 한화 약 42억 원 상당이다.

35) SIAC Arbitration Rule 5. Expedited Procedure.

36)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접수되는 국제중재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본 제도를 도입한 바, SIAC와는 그 제도 도입 배경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임성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법률신문, 2012. 2. 2).

37) SIAC Arbitration Rule 1.3 Scope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38) SIAC Court Member는 총 16명으로 회장은 호주 국적 변호사이며, 우리나라의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siac.org.sg/about-us/court-of-arbitration> 2014. 10. 12. 최종방문> 참조.

(3) 기타

중재판정부는 판정부 구성 이후 적절한 시기에 예비회의를 개최해야만 하고,⁴⁰⁾ 당사자명을 지운 이후에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¹⁾⁴²⁾

(4) 소결

SIAC는 ICC 보다 2년 먼저 긴급중재인제도와 다수당사자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신속절차 금액 역시 대폭 증액하는 방식으로 역시 중재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속성과 탄력성이 아시아 권역에서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의 요소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HKIAC

1) 기관 현황

HKIAC는 1985년 설립된 이래 오랜 동안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누려 왔다. 중립적 이미지, 영미법계, 영어권 국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국제중재지로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으로 복속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싱가포르와 그 패권을 놓고 다투는 입장이다.

2) 주요 규칙 개정 내용

HKIAC의 2013년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긴급중재인 제도, 2) 다수당사자 중재, 3) 신속절차 제도의 확대, 4) 중재인 보수체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SIAC와 마찬가지로 긴급중재인 제도와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해서는 제3

39) 김영주, 전계논문(2014), p. 13.

40) SIAC Arbitration Rule 16.3 Conduct of Proceedings.

41) SIAC Arbitration Rule 28.10 Conduct of Proceedings.

42) 대한상사중재원은 부정기적으로 중재판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부 중재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명을 지우고 내용을 일부 각색하는 것이라도 SIAC처럼 규칙에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 신속절차 적용 범위 확대

기존의 신속절차가 적용 가능한 금액은 미화 25만 달러였으나 규칙 개정을 통하여 2,500만 홍콩 달러까지⁴³⁾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이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분쟁금액의 규모, 당사자 합의 또는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게 된다. 단독중재인 선정이 원칙이나 중재합의에서 3인 판정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경우 HKIAC가 단독중재인에 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경합의가 실패하는 경우 3인 판정부에 의하여 심리한다.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⁴⁴⁾

(2) 중재인 보수 체계 변경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당에 대하여 시간당 요율제를 선택할지 아니면 분쟁금액에 따른 정률제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다.⁴⁵⁾

4. JCAA

1) 기관 현황

JCAA는 1950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과 마찬가지로 중재 이외에 알선,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연간 중재사건 접수건수는 20건 내외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 크게 각광받는 중재기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JCAA는 주요 중재기관의 규칙을 벤치마킹하여 상당히 선진화된 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⁴⁶⁾

43) 한화 약 34억 원 상당이다.

44)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Article 41 Expedited Procedure.

45)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Article 10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l Tribunal.

46) Peter Godwin, "JCAA introduces new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Kluwer Arbitration Blog, 2

2) 주요 규칙 개정 내용

JCAA의 2014년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긴급중재인 제도 도입, 2) 다수당사자 중재절차 도입, 3) 중재와 조정의 연계, 4) 절차진행의 효율화, 5)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 삭제, 6) 중재인 확인(confirmation) 제도 도입 등이다. 다른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내용에 국한하여 본 장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재와 조정의 연계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들은 분쟁을 JCAA의 국제상사조정규칙⁴⁷⁾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중재인은 조정인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진행 중인 사건의 중재인이 조정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동 중재인이 조정 중이거나 조정한 사실을 근거로 중재인을 기피할 수 없다.⁴⁸⁾

(2) 절차 진행의 효율화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절차의 신속하고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중재판정부는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계획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와 JCAA에 통지하여야 한다.⁴⁹⁾ 실무상 가장 이른 시점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⁵⁰⁾

014. 3. 3. (<http://kluwerarbitrationblog.com/blog/2011/10/06/briefing-note-on-icc-rule-changes/>).

47)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Rules. 동 규칙은 2009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48)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ticle Mediation and Article Special Rules for the ICMR if an Arbitrator serves as Mediator.

49)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ticle 39 Time Limit of Arbitral Award and Procedural Schedule.

50)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ticle 40 Issues and Terms of Reference.

(3) 중재합의의 서면성 삭제

JCAA의 2008년 중재규칙에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⁵¹⁾ 규칙 개정으로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다.

(4) 중재인 확인 제도 도입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에 의한 중재인 선정은 JCAA의 확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JCAA가 중재인 선정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준 후 중재인 선정에 대한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⁵²⁾

(5) 소결

JCAA의 이번 개정은 전면 개정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개정 범위가 광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역시 매우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중재실무가들이 JCAA 또는 일본의 중재제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으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JCAA의 연평균 중재사건 처리건수가 20여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새로운 제도들이 순조로이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⁵³⁾

Ⅲ.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개정현황 비교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중재기관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중재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51) JCAA 2008년 중재규칙 Article 5. Arbitration Agreement “1.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52)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ticle 25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Arbitrators.

53) 김민규, 전제논문, p. 52 : ICC의 Terms of Reference 역시 절차의 신속화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일부에서는 절차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장을 달리하여 보다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긴급중재인 제도와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한 부분이다.

긴급중재인 제도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신청 후 중재판정부 구성까지의 기간에 대하여⁵⁴⁾ 필요한 구제를 신청할 대상이 생기고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중재사건에 있어 당사자들은 비교적 신속히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외국 법원에 대한 접근의 곤란, 기업비밀을 재판과정에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외국 법원으로부터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주요 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긴급중재인 제도

긴급중재인 제도는 최근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내용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2006년 ICDR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⁵⁵⁾ 2010년까지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였다.⁵⁶⁾ 그러나 2010년 SIAC가 도입한 이래 만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4건이 접수되었고,⁵⁷⁾

5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8년 대법원 승인)에 따르는 경우 중재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후 사무국은 조속히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그 명단에 당사자들은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반송토록 하고 있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1조 제2항) 따라서 중재규칙(2008년)에 의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3인 판정부 중재사건의 경우, 사무국은 양측 당사자들에게 중재인 선정 요청 후 해당 통지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2항) 이 과정에서 기한연장신청서를 일방이 제출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을 위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 제2항). 이렇게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의장으로 활동할 중재인을 선정한다.

55) 안건형·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1권 제2호, 2011, p. 66.

56) 김도훈, 전개논문(2013), p. 201에서 재인용.

57) SIAC가 2010년 규칙 개정을 통하여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4. 3. 6.까지 총 3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전부 내지 일부 인용되었다 (<http://www.siac.org.sg/why-siac/facts-figures/statistics> 2014. 10. 12. 최종방문).

최근 거의 대부분이 중재기관에서 규칙을 개정할 때 긴급중재인 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중재인 제도에서 살펴볼 것은 본 제도의 적용 시점, 신청 및 긴급중재인 선정까지의 기간, 결정에 관한 쟁점(결정기한, 결정의 형식 등), 긴급중재인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적용 시점

SIAC와 JCAA는 개정 중재규칙이 발효된 이후에 개시된 중재신청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ICC⁵⁸⁾와 HKIAC⁵⁹⁾는 개정 중재규칙이 발효된 이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중재기관 이외에 전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중재기관은 SCC, ACICA⁶⁰⁾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LCIA가 대표적이다.⁶¹⁾ 전자의 경우 새로 고안된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긴급중재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후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⁶²⁾

2) 신청 및 긴급중재인 선임까지 기간

공통적으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까지 긴급중재인 신청이 가능하나, 구체적으

58)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29. 5.

59)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2013 Article 1. 4.

60)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6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 규칙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사건은 2007년 제정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개정 국제중재규칙 부칙 ③(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이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중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ICC는 표준중재조항에 대하여 긴급중재인 제도를 제외하는 것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Arbitration without emergency arbitrator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Emergency Arbitrator Provisions shall not apply.”

(<http://www.iccwbo.org/products-and-services/arbitration-and-adr/arbitration/stand-ard-icc-arbitration-clauses> 2014. 10. 13. 최종 방문).

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IAC와⁶³⁾ HKIAC⁶⁴⁾는 중재신청서 접수와 같이 또는 그 이후에만 가능한 반면, ICC⁶⁵⁾와 JCAA⁶⁶⁾는 중재신청서 제출 전이라도 긴급중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ICC와 JCAA는 긴급중재인 신청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만일 이 기한 내에 중재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중재인 신청이 기각된다.⁶⁷⁾

긴급중재인 신청 후 평균적으로는 2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IAC가 1영업일,⁶⁸⁾ ICC⁶⁹⁾와 HKIAC⁷⁰⁾가 2일, JCAA가 2영업일로⁷¹⁾ 되어 있다. 긴급중재인 제도의 주요한 특성 및 도입 배경이 중재판정부 구성 전 신속한 권리 내지 분쟁물의 보전임을 고려할 때 평균 2일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중재인 선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중재인 신청 후 2일 내에 선정권자가 긴급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관계 충돌을 검토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⁷²⁾

3) 결정에 관한 사항

긴급중재인 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긴급중재인의 판단 내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각 중재기관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허용

63) SIAC Arbitration Rule Schedule1 Article1.

64)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1.

65)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29.1.

66)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70.7.

67) ICC Arbitration Rules 2012 APPENDIX V - Emergency Arbitrator Rules 1.6.

68) SIAC Arbitration Rule Schedule1 Article 2.

69) ICC Arbitration Rules 2012 APPENDIX V - Emergency Arbitrator Rules 2.1.

70)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5.

71)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71.4.

72) JCAA의 경우 “2일 이내에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2 영업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노력을 한다”라는 식으로 조문을 구성하였다.

하고 있다. HKIAC는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고 당사자 합의 또는 HKIAC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⁷³⁾ ICC 역시 15일 기한 내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중재법원의 결정 또는 중재법원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⁷⁴⁾ JCAA 역시 기간은 2주이며 연장은 ICC와 거의 유사하다.⁷⁵⁾

또한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의 유형 또한 향후 집행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SIAC⁷⁶⁾와 HKIAC⁷⁷⁾는 판정(award)과 결정(order)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⁷⁸⁾ ICC는 결정(order)⁷⁹⁾ 그리고 JCAA는 일시적인 방책(Interim measure)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⁸⁰⁾

4) 긴급중재인의 권한과 구속력

논의하고자 하는 기관 모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긴급중재인은 더 이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하는 데 차이가 없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있으나 추후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것 역시 동일하다. 긴급중재인 제도의 성격상 중재판정부 구성에 따른 권한 소멸 등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판단되어 진다.

2. 다수당사자 중재

중재절차에 있어서 다수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연

73)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15.

74) ICC Arbitration Rules 2012 APPENDIX V - Emergency Arbitrator Rules 6. 4.

75)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72. 4.

76) SIAC Arbitration Rule Schedule1 Article 6.

77)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12.

78) 싱가포르와 홍콩이 긴급중재인의 결정에 대하여 판정(Award)의 형식도 가능하게 한 것은 해당 국가 중재법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도 중재판정부에 포함되고 긴급중재인의 결정도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9) ICC Arbitration Rules 2012 APPENDIX V - Emergency Arbitrator Rules 6. 1.

80)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72. 4.

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고는 할 수 없다.⁸¹⁾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요 중재기관들에서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한 규칙이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 다수당사자 중재를 실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⁸²⁾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이 규칙 개정을 통하여 다수당사자 중재를 도입하였기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중재기관의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⁸³⁾

1) ICC

ICC 개정규칙은 동일한 계약의 다수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다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제3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가, 다수의 계약 및 병합에 관한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였다.⁸⁴⁾

(1) 추가 당사자의 참가

다른 당사자를 중재절차에 참가시키려고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⁸⁵⁾ 즉, ICC 중재규칙 제7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하여 기존의 중재절차 당사자들이 새로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새로운

81) 강수미,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방법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pp. 79~102 ; 김상균,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검토”, 청구법학, 청구대학교 법학과, 제32권 제1호, 2010, pp. 169~201 ; 유병욱,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논의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3권 제1호, 2008, pp. 127~150.

82) 다수당사자 중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은 Dutco case부터라고 할 수 있다 (Varady, Tibor, Barcelo, John J., III, Von Mehren, Arthur 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 Transnational Perspective, 4ed., West Group, 2009, pp. 441~443).

83)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 내지 유형 구분이 있으나 본 논고에서는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 정한 바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84) 김갑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2011. 11. 3.

85)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7.1 Joinder of Additional Parties.

제3자가 적극적으로 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⁸⁶⁾ 그리고 참가의 시기는 일부의 중재인이라도 선정되기 이전으로 제한된다.⁸⁷⁾

(2) 다수의 계약

다수의 계약과 관련한 중재가 하나의 중재절차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의 바탕이 되는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고, 그 신청이 하나의 중재절차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에 모든 중재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다고 중재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이다.⁸⁸⁾ 역시 이러한 신청에도 제한이 있는데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가 서명되거나 중재법원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는 추가적 신청을 하려면 중재판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⁸⁹⁾

(3) 중재절차의 병합

이미 진행 중인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병합시키기 위한 요건은,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모든 중재신청이 같은 중재합의에 의하는 경우 또는 중재신청이 1개 이상의 중재합의에 의하는 경우라도 중재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며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중재법원은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인 선정 등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재절차가 병합되면 처음 개시된 중재절차로 병합된다.⁹⁰⁾

2) SIAC

SIAC는 ICC에 비하여 다수당사자 관련 조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우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3자가 중재합의의 당사자이고 당해 제3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

86) 김영주(2012), 전제논문, p. 133.

87) Dutco 사례에서도 일방 당사자가 적법하게 중재인 선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다.

88)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9 and Article 4(ii).

89)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23.4.

90) ICC Arbitration Rules 2012 Article 10.

고 있다.⁹¹⁾ 즉, 중재절차 중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 중재합의의 제 3자를 중재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제3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ICC에 비하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제3자 참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직접 이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고 대신 중재규칙 제24조 b항의 해석을 통하여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는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공동의 신청인들과 공동의 피신청인들이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독중재인의 경우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1인의 단독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SIAC 중재법원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한다.⁹²⁾

3) HKIAC

HKIAC는 다수당사자 중재와 관련하여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⁹³⁾

(1) 추가 당사자의 참가

기존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추가로 제3자를 중재절차에 참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본인의 의사로 기존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⁹⁴⁾⁹⁵⁾ 이 과정에서 추가당사자 신청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HKIAC는 이를 결정할 일응의(*prima facie*) 권한을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다.⁹⁶⁾

91) SIAC Arbitration Rule Article 24.b.

92) SIAC Arbitration Rule Article 9.

93) HKIAC 서울사무소 정선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2013년 HKIAC에 접수된 다수당사자 및 다수계약 사건이 전체의 1/3에 정도라고 한다(2013년 HKIAC 중재규칙 한국어 요약본).

94)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27.1 & 27.6.

95) 개정 전 중재규칙 하에서는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를 요구하였다(구 중재규칙 제14조 제6항).

96)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27.8 Where HKIAC receives a Request for Joinder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is confirmed, HKIAC may decide whether, *prima facie*, the additional party is bound

그리고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추가로 참가하면 이 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HKIAC는 이미 선정된 중재인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⁹⁷⁾

(2) 절차 병합

HKIAC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 및 이미 확정된 중재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는 데 그 조건은, 당사자들이 절차병합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청이 같은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중재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신청들에 대하여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있고 이에 대하여 HKIAC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병합할 수 있다.⁹⁸⁾

추가 당사자의 참가와 마찬가지로 HKIAC가 절차를 병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ICC와 동일하게 처음 개시된 중재절차에 병합하는 것으로 본다.⁹⁹⁾

(3) 다수의 계약

하나 이상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이라도, 중재의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의 근거가 된 중재합의에 구속되는 경우, 중재의 근거가 된 중재합의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가 공통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또는 일련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에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면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다.¹⁰⁰⁾

by an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se Rules giving rise to the arbitration, including any arbitration under Article 28 or 29. If so, HKIAC may join the additional party to the arbitration. Any question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rising from HKIAC's decision under this Article 27.8 shall be decided by the arbitral tribunal once confirmed, pursuant to Article 19.1.

97)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27.11.

9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28.1.

99)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28.6.

100)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4 Article 29.1.

4) JCAA

(1) 추가 당사자의 참가

중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3자는 신청인으로서, 기존 당사자들이 새로운 제3자를 참가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피신청인으로서 제3자 참가가 가능한 데, 요건은 모든 당사자와 제3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모든 청구들이 동일 중재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이다. 단,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 제3자가 피신청인으로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제3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¹⁰¹⁾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 참가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¹⁰²⁾

(2) 절차 병합

일방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하에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진행 중인 청구와 병합할 청구가 동일 중재합의의 경우 그러나 병합할 청구의 당사자가 진행 중인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동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진행 중인 청구와 병합할 청구가 동일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고 분쟁이 JCAA 중재 또는 JCAA 규칙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며 해당 청구들과 관련된 중재지, 중재인의 수, 중재언어 및 기타 사항들이 하나의 중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¹⁰³⁾

(3) 다수의 청구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단일의 중재절차로 합의한 경우,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모든 청구들이 동일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고 이러한 청구들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실 및 법률문제에 관한 것이며 분쟁이 JCAA 중재 또는 JCAA 규칙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며 해당 청구들과 관련된 중재지, 중재인의 수, 중재언어 및 기타 사항들이 하나의 중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¹⁰⁴⁾ 중재판정부가 위 단일중재 청구가 중재규

101)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52.1.

102)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52.3.

103)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53.

칙 제15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중재절차를 분리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⁰⁵⁾

5) 비교

(1) 추가 당사자의 참가

ICC는 기존 당사자들이 제3자를 참가시키는 것만 허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 - 제3자의 능동적인 참가 - 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SIAC 역시 기존 당사자들의 신청과 제3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HKIAC와 JCAA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기존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JCAA의 경우 HKIAC에 비하여 그 요건이 엄격한 데, 모든 당사자와 제3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것 또는 모든 청구들이 동일 중재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 제3자가 피신청인으로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제3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ICC는 중재판정부의 지정 내지 확인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를 불허하며 SIAC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HKIAC는 중재인 선정 이전에 제3자 참가 결정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반면, JCAA는 중재인 선정 이전에 참가한 제3자는 일반적인 중재인 선정 절차의 준용을 받으며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는 해당 중재판정부가 유지된다.

추가 당사자의 참가 역시 분쟁의 1회적 해결과 이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출발한 것이라면 굳이 제3자 참가를 중재판정부 구성 전 또는 후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JCA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도 선정권한을 포기한 제3자 - 특히 사무국 선정 중재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⁶⁾

104)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15. 1.

105) JCAA Arbitration Rules Article 42. 1.

106) 만일 A, B, C간의 단일계약에 있어 A가 신청인이고 B가 피신청인인 사건에서 B가 자기와 이해충돌이 있는 C를 참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선정 방식에 의하여 C가 선정한 중재인이 있는 중재사건에 B가 참여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

시기의 문제와 더불어 제3자가 중재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 듯한 ICC와 SIAC의 규칙 또한 분쟁이 효율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ICC의 경우 중재위탁요지서(TOR)를 통하여 주요 쟁점을 중재절차 초기에 확정하는 관행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재절차 중에도 제3자 참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재절차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추가 당사자의 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병합

ICC, HKIAC 그리고 JCAA 모두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는 중재제도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 가능한 요건으로는 모든 신청이 같은 중재합의에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판단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방당사자는 3인 판정부에 의하여 판단하길 원하는 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미 구성된 중재판정부 구성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나 일반절차 이외에 신속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길 바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무턱대고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경우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HKIAC의 경우처럼 중재기관이 절차를 병합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자칫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⁰⁷⁾ 특히 JCAA의 경우 동일한 중재합의라 할지라도 병합하고자 하는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진행 중인 절차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 그 다른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세 번째 요건은 1개 이상의 중재합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ICC와 JCAA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HKIAC는 그렇지 않다. 실제 규칙을

정부가 사무국 또는 중재법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107) HKIAC 중재규칙 1.4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절차 병합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체결된 중재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동일하지 않은 데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 등이 있고 중재합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 다른 당사자들 간에 절차 병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동일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 중재인 선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중재절차를 적절하게 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상사중재원과 SIAC는 절차 병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3) 다수의 청구(계약)¹⁰⁸⁾

ICC는 당사자의 동의, 동일한 중재합의, 당사자와 법률관계의 동일성 또는 중재합의의 양립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 HKIAC는 동일한 중재합의,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가 공통적인지 여부 또는 동일한 또는 일련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에 중재합의의 양립가능성을 들고 있다. JCAA는 서면에 의한 동의, 동일한 중재합의 그리고 동일 당사자임을 전제로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하나의 중재절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한상사중재원과 SIAC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모든 당사자 간의 합의는 새로운 중재합의의 효력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상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중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3개 기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이 규칙 개정을 통하여 다수의 청구(계약)에 대한 조문 작성 시에도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 동일성 혹은 거래관계의 유사성 그리고 중재합의의 양립가능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깊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선례도 많이 없는 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⁹⁾

108) ICC와 HKIAC는 Multiple Contracts로 표기하고 있으나 JCAA는 Multiple Claims로 대신하고 있다.

109) 중재규칙을 혁신적이고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중재합의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중재판정 취소의 소 내지 집행 거부의 소로 인하여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되어 중재를 기피하게 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활성화 및 대한민국 서울을 국제중재의 허브로 육성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설치되었고 센터 내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중재기관 지부 등이 설치되었다. 이들 중재기관들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근 몇 년 간 중재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시로 모여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 수요자인 우리 법조계 및 국제무역의 실무자들은 최근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의 주요 중재기관들은 중재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고객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절차일정표를 작성하고 중재판정 예정일을 고지하게 하여 고객들이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속절차 적용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으며, 중재인 보수 체계 또한 분쟁금액에 따른 정률제와 시간당 요율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자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당사자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중재판정부 구성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웠고 이 같은 점이 중재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긴급중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청 후 통상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이 2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 및 긴급중재인의 공정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 자칫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점이 추후 긴급중재인 제도의 보급 및 확산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재기관들은 평소 충분한 수의 긴급중재인단을 보유하여야 하고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다수당사자 사건 또는 동일 당사자 간이라도 2

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이를 한 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타당한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지니는 중재제도의 특성상 적용 가능한 범위를 소송과 같이 확장시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수당사자 관련 분쟁의 해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¹¹⁰⁾ 그러나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 중재기관들은 다수당사자 간 중재, 다수 계약과 관련한 중재에 대한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사건을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다수당사자 및 중재절차 병합 시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 중재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인 당사자 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 중재인 선정 단계, 분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최근의 국제중재규칙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이러한 개정작업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10)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11, p. 9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pp. 197~198.

참 고 문 헌

- 강수미,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방법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_____,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2011. 11. 3.
-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 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 교검토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제62호, 2013.
- _____, “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3권 제3호, 2012.
- 김민규, “ICC Terms of Reference 제도의 도입 검토”, 계간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제340호, 2013.
- 김상균,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검토”, 청주법학, 청주대학교 법학과, 제32권 제1호, 2010.
- 김영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의 2012년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5권, 2012.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박범철,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 CIETAC, HKIAC, SIAC, KCAB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1호, 2013.
- 박원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동향 - ICC 중재규칙의 개정과 비교하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2권 제2호, 2012.
- 박은옥·최영주, “중재에 있어서 실체적 준거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8권, 2013.
-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9권, 2008.
- 안건형·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의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1권 제2호, 2011.

유병욱,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논의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3권 제1호, 2008.

임성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법률신문, 2012. 2. 2.

Godwin, Peter, “JCAA introduces new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Kluwer Arbitration Blog, 2014. 3. 3.

Power, Richard, “Briefing note on ICC Rule change”, Kluwer Arbitration Blog, 2011. 10. 6.

Tibor, V., John, B., & von Arthur, M,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 Transnational Perspective, 4ed.*, West Group, 2009.

일본상사중재협회 홈페이지 (www.jcaa.or.jp)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www.kcab.or.kr)

홍콩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 (www.hkiac.org)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 (www.siac.org.sg)

ABSTRACT

A Study on the Key Features of the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for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Kim, Jung Nyun

Last year,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SIDRC) was set up to facilit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SIAC, HKIAC and JCAA. As a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 in the world, ICC has tried continuousl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 to their client by adopting emergency arbitrator(EA) & multi party arbitration. Other three institutions also introduced almost same mechanism to compete each other.

These two new system is very innovativ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of all, EA was designed to provide interim measure service to preserve or protect parties' right before the constitution of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l tribunals should be careful to decide these requests are legitimate or not because too hasty approval on joinder or consolidation without full consideration such as parties' intention or argument may issue another serious problem - setting aside an award rendered after joined or consolidated.

Key Words :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IDRC,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Emergency Arbitrator,
Multi Party Arbitration